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이용우 · 장철민 · 김남희
박홍배 · 민병덕 · 복기왕
이학영 · 박민규 · 임미애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경우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불균형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직무를 단순히 소홀히 하는 데에 그친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문 실정임.

아울러 “소홀히”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음.

요컨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할 것이나, 단순히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함.

이에 처벌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자’에서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우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률 제 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각각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u>아니하거나 소홀</u> <u>히 한 사람</u>	2. ----- ----- <u>아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 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u>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u>	2. ----- ----- <u>안</u> <u>니한 자</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